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 추가〉

■ 최보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264호)

2025.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개정안의 내용	3
2. 검토의견	5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4

I. 개요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최보윤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8. 20.

(3) 회 부 일 : 2025. 8. 2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적정 의료인 수 또는 시설·장비 등의 시설기준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해 판단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방지하기 위한 역할도 하고 있음.

현재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의료인으로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의료기관단체의 회원으로서 의료기관 개설·운영 등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 단계에서 사무장병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무장병원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문인력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추천

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대한 심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33조의2).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위원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자료요청권을 부여하려는 것임 (안 제33조의2).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위원은 제28조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및 「간호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의 의료인으로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의 회원으로서 해당 지역 내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제33조의2(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28조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및 「간호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의 의료인으로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의

<신 설> ③ (생 략)	<u>회원으로서 해당 지역 내 의료 기관의 개설·운영 등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u> 3. <u>의료기관의 보험급여비용 청구·심사·지급 업무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추천하는 사람</u> ③ <u>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위원은 제3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검토의견

□ 현행법 제33조의2¹⁾는 제33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그 위원은 제28조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및 「간호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의 의료인으로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의 회원으로서 해당 지역 내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시행규칙에서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위원장 1명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되어 있음.

□ 이에 따라 각 시·도지사 소속으로 7~13명 규모의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각각 설치되어 있으며 그 구성 현황은 다음과 같음.

- 다만, 경기도의 경우 30개 기초자치단체별로 각각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어 총 265명의 위원이 선임되어 있음.²⁾

1) 「의료법」

제33조의2(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등) ① 제33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위원은 제28조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및 「간호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의 의료인으로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의 회원으로서 해당 지역 내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③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이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두면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법령을 위반한 것이므로,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각 시·도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구성 현황 >

시·도	위원 자격						임기(현행)	
	의사회	치과 의사회	한 의사 회	조산사 회	간호사 회	병원급 의료기관 단체	부터	까지
서울특별시 (13명)	2	2	2	0	2	5	24.10.28.	26.10.27.
부산광역시 (10명)	2	1	1	0	1	5	24.9.16.	26.9.15.
대구광역시 (7명)	2	2	1	0	1	1	24.10.5.	26.10.4.
인천광역시 (10명)	2	2	2	0	2	2	24.10.19.	26.10.18.
광주광역시 (13명)	4	2	4	0	2	1	24.9.11.	26.9.10.
대전광역시 (8명)	3	2	2	0	1	0	24.9.29.	26.9.27.
울산광역시 (8명)	5	1	1	0	1	0	24.9.21.	26.9.20.
세종특별자치시(7명)	3	0	1	0	3	0	24.10.16.	26.10.15.
충청북도 (10명)	2	1	1	0	2	4	24.10.7.	26.10.6.
충청남도 (11명)	3	1	2	0	3	2	25.1.26.	27.1.25.
전라남도 (12명)	4	1	2	0	4	1	24.10.24.	26.10.13.
경상북도 (11명)	4	1	1	0	3	2	24.9.11.	26.9.10.
경상남도 (9명)	2	1	2	0	2	2	25.6.25.	27.6.24.
강원특별자치도(12명)	2	2	2	0	1	5	24.10.21.	26.10.20.
전북특별자치도(11명)	3	2	2	0	2	2	24.9.28.	26.9.27.
제주특별자치도(10명)	2	1	1	0	1	2	24.10.8.	26.10.7.
경기도 (265)	67	52	49	3	41	45	-	-

주1) 제주특별자치도 3명, 경기도 8명의 위원은 자격 미기재

주2) 경기도의 경우, 기초자치단체별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각각 설치하고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

□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역할은 제33조제4항3)에 따라 시·도지사의 각종 병원 개설 허가 과정에서 사전심의 및 본심의를 하는 것이며, 시·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제36조4)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60조5)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음.

또한, 제33조제2항6)에 따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등

3)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④ 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3조의2에 따른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 및 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1.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2.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의료법」

제36조(준수사항)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2.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3.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4. 고가의료장비의 설치·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5.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
6. 급식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7. 의료기관의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8. 의료기관의 의약품 및 일회용 의료기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
9. 의료기관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기준에 관한 사항
10. 의료기관 내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 기준에 관한 사항
11.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에 관한 사항
12. 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에 관한 사항
13. 의료기관의 의료관련감염 예방에 관한 사항
14.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입종실 설치에 관한 사항

5) 「의료법」

제60조(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에 관한 기본시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지역별·기능별·종별 의료기관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이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맞지 아니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6)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또는 의원,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동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으므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사전심의 단계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확인하고 있음.⁷⁾

- 현행법은 제3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이른바, ‘사무장병원’) 의료업 정지 또는 개설허가 취소 및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⁸⁾.

-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7)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의료기관 개설신고)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 전단에 따라 그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1. 법 제4조제2항, 제33조제2항,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64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기준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법 제36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한지 여부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에 적합한지 여부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지 여부

제26조의2(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 신청 등)

①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의 개설허가 사전심의(이하 이 조에서 “사전심의”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서에는 제6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한다), 정관 사본 및 사업계획서 사본
2. 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사업계획서 사본

⑥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와 관련하여 법 제33조의2에 따른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이하 이 조, 제27조 및 제27조의2에서 “위원회”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전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1. 의료기관 개설을 허가할 경우에 지역 병상 수(사전심의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지역 병상 수를 말한다)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병상 수급 기본시책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기준에 위배되는지 여부
3. 그 밖에 시·도지사가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4의2.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때

제87조(벌칙)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무장병원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제2항제1호9)에 따라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게 되는데, 환수 결정액은 2009년부터 2025년 8월까지 2조 2,004억원 규모에 이르고 있으나, 실제 징수되는 금액은 환수결정액의 약 9%에 그치는 실정으로, 사무장병원은 의료시장의 건전성을 해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제87조의 형벌 규정은 2019.8.27. 법률 개정을 통하여 종전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법정형을 상향한 것임.

□ 사무장 병원에 대한 제재조치

- (급여비용) 수령한 급여비용 전체를 허위 부당청구금으로 환수*
 - * 의료인과 사무장(비의료인)은 부당이득에 대해 연대책임
- (형사처벌) 사무장(비의료인)에게는 10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의료법 제87조)
 - * 면허증 대여 의료인은 5년·5천만원, 고용된 의료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 분		위 반규정	급여 환수	행정 처분	형사 처벌
실 제 개설자	비의료인	제33조제2항	○	(의료기관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10년 1억원
명 의 대여자	의 료 인	제4조의3제1항	○	면허취소	5년 5천만원
	(의료)법인	제33조제10항	○	법인설립허가취소	5천만원

9)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2.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등의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약국

제96조(자료의 제공)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료를 산출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국세·지방세·토지·건물·출입국관리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보험료의 부과·징수, 보험급여의 관리 등 건강보험사업의 수행
2. 제1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

② 심사평가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료를 산출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출입국관리·진료기록·의약품공급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성실히 이에 따라야 한다.

< 연도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현재 기준 업데이트)>

(’25.8.31일 기준, 단위: 개소, 백만원, %)

구분	환수결정		징수	
	기관수	금액	금액	징수율
계	1,546	2,200,472	197,908	8.99
2009	6	342	122	35.67
2010	43	7,264	1,365	18.79
2011	152	56,109	6,848	12.20
2012	144	56,786	7,359	12.96
2013	136	119,181	9,835	8.25
2014	159	212,858	16,847	7.91
2015	159	292,117	16,304	5.58
2016	183	210,483	16,865	8.01
2017	181	383,764	15,841	4.13
2018	100	168,129	21,040	12.51
2019	83	192,750	17,378	9.02
2020	37	181,196	11,037	6.09
2021	16	21,850	10,411	47.65
2022	16	18,606	8,040	43.21
2023	34	58,144	14,136	24.31
2024	46	131,048	14,008	10.69
2025	51	89,845	10,472	11.66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 개정안은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 구성에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비용 청구·심사·지급업무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의료기관 개설·운영 관련 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 심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참고로, 현행법 제33조의2에 따른 시·도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제도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과정에서 사무장병원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¹⁰⁾ 2020. 3. 4. 「의료법」 개정을 통하여 도입되었음(2020. 9. 5. 시행).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마다 약 160개소의 사무장병원 의심 의료기관에 대하여 상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¹¹⁾,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2. 불법의료기관 근절 및 징수강화 등을 위해 T/F 형태로 ‘의료기관지원실’을 출범하였으며, 2018년부터는 사무장병원 및 부당청구 확인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로 정식 편제하였음.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의 인지 건 중 건강보험공단의 분석에 의한 발견 건은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1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2019.7.19. 최도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21559호) 제안이유
“지자체 산하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하여 의료기관 개설 시 사무장병원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여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근절하고자 함”

11) 사무장병원 여부 확인을 위해서 의료기관 개설과정, 직원관리·운영, 수익의 귀속, 동일 장소에서의 개·폐업 이력 확인 등이 이루어진다고 함.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제1항의 보고 및 제2항의 조사명령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 등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6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제33조제2항·제10항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임을 명시한 경우에 한정한다)

< 연도별 의료기관 행정조사 현황('16~'25년) >

2025. 8. 31.기준 (단위: 개소, 백만 원)

구분	행정조사 기관 수	수사의뢰 기관 수	
		기관 수	수사의뢰 금액
총계	1,479	963	5,842,829
2016	123	83	309,130
2017	142	94	567,046
2018	161	83	762,995
2019	168	92	538,740
2020	30	20	133,506
2021	166	89	387,496
2022	190	123	803,411
2023	208	146	1,605,896
2024	161	128	442,664
2025	130	105	291,945

자료: 보건복지부

<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인지 유형별 현황('16~'25년) >

2025. 8. 31.기준 (단위: 개소, %)

구분	계	건보공단 자체 분석		민원 제보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계	1,479	1,038	70.18	441	29.82
2016	123	113	91.87	10	8.13
2017	142	111	78.17	31	21.83
2018	161	78	48.45	83	51.55
2019	168	92	54.76	76	45.24
2020	30	11	36.67	19	63.33
2021	166	118	71.08	48	28.92
2022	190	133	70.00	57	30.00
2023	208	168	80.77	40	19.23
2024	161	116	72.05	45	27.95
2025	130	98	75.38	32	24.62

자료: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다만,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자료요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되어 시·도지사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자문위원회’로, 합의제행정기관과 달리 국가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¹²⁾ 따라서 자료요청권자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속한 시·도지사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개정안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허가 심의 시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경우, 주로 개설허가 신청자의 기존 개설 이력(개·폐업 이력, 사무장병원 적발이력, 징수금 체납현황 등)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i) 개정안에서는 요구할 수 있는 자료와 대상기관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ii)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개설신청자와 동종업계에 있는 의료인 등 민간위원으로만 구성¹³⁾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료요구 및 제출 과정에 개인정보의 부당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출대상 기관 및 자료의 범위를 법률에서 특정하거나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의료기관 개설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한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정보 누설 금지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함¹⁴⁾.

1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는 위원회를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합의제행정기관인 위원회와 합의제행정기관이 아닌 위원회로 구분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수 있는 합의제 행정기관과 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이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문기관으로 구분하고 있음.

13) 「의료법」

제33조의2(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등) ① 제33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위원은 제28조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및 간호사회의 의료인으로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의 회원으로서 해당 지역 내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③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4) 입법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한편 참고로, 제21대국회에서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¹⁵⁾이 발의되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 차례 상정('21.11.24.)되었으나,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폐기된 바 있음.

3.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1) 보건복지부 (수정 수용)

-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에 건보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자료제출·의견진술 요청권을 부여하여,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대한 심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함.
- 다만, 지역별 여건 및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시·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에 추가할 필요가 있음.

제37조(자료 요청) ① 교육부장관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을 수행할 때 채무자 본인의 가족 관계등록자료 및 주민등록자료, 채무자 본인과 채무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 관련 자료,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 재산 관련 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원행정처,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고등교육기관
4. 금융회사등(은행연합회를 포함한다)
5.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에 대하여는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 등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요청하는 자료의 종류 및 내용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7492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1479호)

2)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정 수용)

□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따라 사무장병원 진입방지를 위해 실제 사무장병원 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단의 참여가 필요함.

- 다만, “의료기관의 보험급여비용 청구·심사·지급 업무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라는 문구는 공단의 고유 업무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공단의 업무를 반영하여 “보험급여의 관리,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및 환수 업무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로 수정이 필요함.

□ 또한, 개설위원회 위원에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시·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을 추가하여 의료자원 분포, 인구구조, 보건의료수급상황 등 지역 특수성을 파악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중립적 시각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3) 대한의사협회 (반대)

□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까지 요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심의 권한까지 부여하면 의료보험자의 입장에서 편파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등 대등해야 할 보험자와 공급자의 관계를 왜곡시킬 수 있음.

□ 또한, 의료기관 개설 시 신청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가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와 별개의 자료를 신청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제공 받아 위원회가 검토하는 것은 행정기관에 불필요하고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임.

4) 대한치과의사협회 (반대)

- 개정안에 따르면 위원 자격으로 “의료기관의 보험급여비용 청구·심사·지급 업무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추천하는 사람이 추가되는바, 이는 위원이 보험급여비용 청구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을 전제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로서 이러한 위원 자격 추가는 당초 개설위원회 입법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임.

문 의 처
02)6788-5494